

부천시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0. 4. 20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0. 4. 21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00. 4. 28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 권병준)

가. 제안이유

- 중동지구 택지개발시 종교용지로 지정된 중동 1051-7번지를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주공으로부터 93년 12월 매입, 중동성당을 신축계획이나 종교용지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성당 신축이 어렵다는 민원발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
- 또한 중동 31-12번지 일원 열악한 단독택지의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조성 부지 확보와 공원시설 변경계획에 따라 축소되는 공원시설 부지를 대체 확보하여 썸지공원을 설치함으로써 공원시설 축소에 따른 대체공간 확보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

- 인근 중동지구 외에 위치한 천주교재단 소유 토지인 중동 31-12번지 외 2필지 지적면적 859㎡ 중 820㎡(248평)과 종교용지와 접해 있는 중동 1051-3번지 도시계획시설(공원 : 근린공원) 일부를 변경결정(축소 820.㎡)하여 상호 교환하며
- 교환에 따른 토지가격의 증·감분의 금액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인천교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종교부지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공원 : 근린공원) 변경결정 신청이 있어 금회 도시계획 변경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5호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○ 토지교환에 따른 토지가격의 증·감분에 대한 금액은 어디서 부담하는가?	○ 토지가격의 차액은 재단법인 인천교구에서 전액 부담함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찬성의견서 채택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붙임서류 : 의견서 1부

의 건 서

의안번호	제324호	안전명	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
제 출 자	부천시장	의 결 년월일	제7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(2000. 4. 28)

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

종교용지로 지정된 중동1051-7번지가 종교용지로는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성당신축이 어렵다는 민원을 해소하고, 또한 중동 32-12번지 일원의 열악한 단독주택지의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조성 부지 확보와 공원시 설변경계획에 따라 축소되는 공원시설 부지를 대체 확보하여 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타당함

2000년 5월 3일

부 천 시 의 회 의 장

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결정안

의안번호	제324호
의결년월일	2000. 5. 3 (제78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4. 2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중동지구 택지개발시 종교용지로 지정된 중동 1051-7번지를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주공으로부터 93년 12월 매입, 중동성당을 신축계획이나 종교용지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성당 신축이 어렵다는 민원발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
- 또한 중동 31-12번지 일원 열악한 단독주택지의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조성 부지 확보와 공원시설 변경계획에 따라 축소되는 공원시설 부지를 대체 확보하여 썸지 공원을 설치함으로써 공원시설 축소에 따른 대체공간 확보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
- 인근 중동지구 외에 위치한 천주교재단 소유 토지인 중동 31-12번지 외 2필지 지적면적 859㎡ 중 820㎡(248평)과 종교용지와 접해 있는 중동 1051-3번지 도시계획시설(공원 : 근린공원) 일부를

변경결정(축소 820.㎡)하여 상호 교환하며,

- 교환에 따른 토지가격의 증·감분의 금액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인천교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종교부지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공원 : 근린공원) 변경결정 신청이 있어 금회 도시계획 변경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5호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함

□ 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결정조서(안)

구분	시설명	세부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공원	근린공원	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-3	16,185.4	감)820.0	15,365.4	

□ 참고사항

- 현재의 종교용지 현황

위 치	지목	면적(㎡)	소 유 자	비고
중동 1051-7	종교	830.5	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	

○ 도시계획 용도지역·지구 : 일반주거지역, 최고고도지구, 도시설계지구, 상세계획구역

※ 택지개발사업 완료지역으로 시행자인 주공으로부터 93. 12. 27일 종교용지로 매입

- 종교용지 확장계획(안) → 공원시설 변경

위 치	지목	지적(㎡)	면적(㎡)	소 유 자	비고
계			1,650.5		
중동 1051-7	종교	830.5	830.5	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	
중동 1051-3	공원	16,185.4	820.0	부천시	공원시설

○ 도시계획 용도지역·지구

- 종교부지 : 일반주거지역, 상세계획구역, 도시설계지구, 최고고도지구
- 공원부지 : 자연녹지지역, 상세계획구역, 도시설계지구, 최고고도지구

- 인접 상당소유 교환대상 토지현황

위 치	지목	지적(m ²)	교환면적(m ²)	소 유 자	비고
계		859	820	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	
중동 31-12	전	185	185	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	
중동 32-10	대지	198	159	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	
중동 32-16	대지	476	476	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	

○ 도시계획 용도지역·지구 : 일반주거지역, 최고고도지구

○ 교환대상 토지 활용계획

○ 교환토지 활용 : 주변 단독주택지 및 배후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조성

- 소요사업비 : 30,000천원

○ 기존 공원시설물 처리계획 : 소공원 조성지에 이전 설치 및 재활용

○ 종교용지 토지이용계획(안)

구 분	계	건축부지	조경부지	주차장부지	부속대지	비고
면적(m ²)	1,650.50	936.00	169.36	459.37	85.77	
비율(%)	100.0	56.7	10.3	27.8	5.2	

○ 그간 추진사항

○ 99. 8. 10 공유재산(공원)과 천주교재단 재산의 교환 건의(천주교 인천교구 → 부천시)

○ 99. 8. 19 관계부서 회의 개최

○ 99. 9. 6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교환 심의(제14회 시정조정위원회 : 원안가결)

○ 99. 10. 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 시의회 의결(제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)

○ 공원결정근거 :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중동지구 제10차 택지개발계획 제10차 변경시 건교부 고시 제96-35호(96. 2. 6)로 최종 변경결정

○ 공원시설 결정(변경)권자 : 경기도지사(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)

위 치 도

위 치 도
(S = 1 : 3,000)

